

전주풍남학사 입사생(후보자) 추가모집 공고

전주시를 선도해 나갈 인재양성의 요람 전주풍남학사에서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도권 소재 정규대학에 진학한 우수 대학생에게 수학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육성시키고자 다음과 같이 2026년도 전주풍남학사 입사생(후보자) 추가모집을 공고합니다.

2026년 6월 1일

전 주 시 장

1 시설현황

- 위 치 :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봉길 48(구기동, 전주풍남학사)
- 규 모 : 대지면적 1,983㎡, 연면적 2,777㎡(지하1층, 지상3층)
※ 4개동 운영(인의관, 예지관, 지성관, 정진관)
- 정 원 : 88명(장애인 2명 포함)
- 시설내용 : 기숙사(2인1실), 식당, 도서관, 체육관, 세탁실 등
- 학 사 비 : 입사비 70,000원, 월 사용료 150,000원(1일 3식 포함)

2 추가모집 개요

- 모집공고 : 2026. 6. 1.(월) ~ 7. 10.(금) / 39일간
 - 전주시청 누리집(<http://www.jeonju.go.kr>) ‘고시/공고’란 공고
- 모집기간 : 2026. 6. 1.(월) ~ 7. 10.(금)
- 모집인원 : ○명 (남 ○명, 여 ○명)
 - ※ 결원 수 및 예비후보자 소진 상황에 따라 모집인원 변동

3 자격요건

- 공통사항
 - ① 수도권(서울특별시·인천광역시·경기도) 소재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의 신입생 및 재학생
 - ② 보호자 : 공고일(2026. 6. 1.)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전주시 또는 완주군에 주민등록상 거주 중인 자
- 일반조건(조례 제5조) : 전주시 또는 완주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(또는 기졸업자)
- 특례조건(시행규칙 제4조) : 전주시 또는 완주군에서 초·중학교 중 1개 이상 학교를 졸업하고 관외 지역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검정고시 출신자

4 입사자격 제한

- 퇴학·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 중인 사람
 - ※ 단, 휴학한 사람 중 다음 학기에 복학예정인 자는 제외
- 입사생 학사수칙의 퇴사요건에 해당되어 퇴사한 사람

5 원서접수

- 접수기간 : 2026. 6. 1.(월) ~ 7. 10.(금) (39일간) (주말 포함)
- 접수방법 : 방문, 등기우편, 이메일
 - 방문 및 등기우편 :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봉길 48, 전주풍남학사
 - ※ 단, 등기우편 접수의 경우 최종일 소인분 접수 인정
 - 이메일 : 69252881@daum.net
 - ※ 제목 작성 : 이름∨추가모집∨입사원서(㉸ 홍길동 추가모집 입사원서)
 - ※ 모든 서류 원본을 한 번에 스캔 후 한 개 파일로 제출(사본 불가)
- 문 의 : 전주풍남학사사무소 ☎02-6925-2882

6 구비서류

- ① 입사원서 1부 (붙임 양식)
- ② 개인정보제공동의 및 활용 승낙서 각1부(학생,학부모) (붙임 양식)
- ③ 주민등록등본 1부 (부 또는 모) :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 미표시
 - ※ 학생과 보호자의 주민등록 주소가 다를 경우 : **가족관계증명서(상세)** 추가
 - ※ 등본상 현주소 발생일이 2026. 6. 1.기준 1년 미만일 경우 : 보호자 **초본** 추가
(최근 5년간 주소변동 포함)
 - ※ 한부모(배우자 사망, 이혼 등)일 경우 : **가족관계증명서(상세)** [보호자기준]추가
- ④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.
- ⑤ 재학증명서 1부.
 - ※ 이 외에 자격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

7 선발통보 및 입사 절차

○ 입사순위 결정 및 선발 통보

- 추가 모집자 순위는 추가모집 입사신청 접수 순서로 부여하되,
잔여 예비후보자의 다음 순위로 부여
- 접수기간 이후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입사 및 예비후보자 선발 통보
※ 입사 신청 후 재학 여부 등 자격 사항이 변동되어 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
입사할 수 없음

○ 입사절차

- 입사등록일 : 최종 선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(휴일포함)
- 추가서류(입사등록원서, 서약서, 건강진단서) 제출

8 기타사항

- 학사 거주기간 : 입사일 ~ 학년말(2027. 2. 20.)까지
- 부담금 납부 : 입사비 7만원, 월 사용료 15만원
- 사실 배정은 시행규칙 제3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배정하되, 학사 사정을
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음